

황록 사퇴가 던진 메시지... 금융공기업 수장 “나 떨고 있니”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금융CEO 임기 미보장에 좌불안석 경영공백 장기화·낙하산 재현 우려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사진)이 최근 돌연 사의를 표한 가운데 아직 임기가 남은 다른 금융공공기관장들의 자리 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황 이사장은 지난 5일 20개월 여의 임기를 남기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노조는 이에 대해 “정부 고위층 인사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현재 황 이사장의 사의에 따라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후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후임 신보 이사장은 임추위를 통해 복수의 임원 후보를 추천,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취임 15개월 만에 돌연 사퇴

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10월 말 취임해 오는 2019년 10월 말까지가 임기다. 갑작스

런 사임으로 취임 1년 3개월 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셈이다.

황 이사장은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우리파이낸셜 사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꼽혀왔다. 취임 이후 이 같은 전문가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황 이사장의 돌연 사의는 석연찮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후임 이사장에 이미 내정됐고 황 이사장은 위로부서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물러났다”면서 “정부가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밀실야합’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면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후임 이사장으론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와 최영록 세제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 다른 금융공공기관장들 역시 남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니하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오는 2020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김규욱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거취 문제가 제기된다. 이보다 임기가 앞선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2019년 11월)과 김도진 기업은행장(2019년 12월)도 비슷한 입장이다.

오는 5월 퇴임을 앞둔 광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경우 교체가 확실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에 따른 금융공공기관 수장 교체가 가시화되면서 다른 기관장들 역시 불

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

한편 신보 내부에선 현재 임원진들의 ‘경영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신보 내부 상임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황 이사장 사퇴로 인해 후임 인선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보 등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은 기관장에게 있다.

장욱진 신보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사업이 추진력을 잃는 등 내부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담당부처 역시 현재 금융위에서 문 정부 신설조직인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밀면서 신보 조직의 핵심 업무인 중소기업 지원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말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과 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신보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금융위 소관이었던 기보는 이미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돼 기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정책보증을 지원하는 신보 역시 중기부로의 이관이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신보가 공공 기금으로서 추진력 있게 관련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삼성 금융계열사 CEO인사 임박... ‘세대교체’ 되나

삼성생명·화재 오늘 임추위 개최 미전실출신 새 CEO 선임 가능성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되면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최고 경영자(CEO) 인사 단행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삼성전자의 삼성물산 등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지만 보험·카드 등 금융계열사 인사는 미뤄왔다. 앞서 삼성그룹 인사에서 ‘세대교체’ 및 ‘성과주의’ 원칙에 따른 인선이 이뤄져 금융계열사 인사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화재는 8일, 삼성증권과 카드는 9일 각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CEO 인선에 착수한다.

삼성생명 등 4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내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때문에 각 사는 주총 전 임추위를 구성하고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받은 물론 이사회 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사회를 통한 주총 안건 확정과 해외 주주 등 위임장 임명 등 일정을 고려할 때 통상 한 달 전에는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주 늦어도 설 명절까진 인사가 이뤄지도록 각 사가 CEO 인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두 사장 모두 오는 2020년까지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다.

지난해 실적도 나쁘지 않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1조 2925억원으로 전년 2조2185억원 대비 당기순이익이 39.9%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삼성생명의 순이익에 일회성 이익이 포함돼 이를 제외한 실적 순이익은 9361억원으로 사실상 순이익 증가세를 시현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5년 7827억원, 2016년 8409억원, 2017년 9202억원으로 3년 연속 순이익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의 경

우 전년 대비 11.6% 순이익이 증가했다.

다만 앞선 삼성그룹 인사에서 ‘60대 CEO 퇴진룰(rule)’이 적용되면서 업계에선 각 사의 세대교체 전망이 나왔다. 김 사장과 안 사장은 각각 1955년, 1956년생으로 모두 60대다. 실제 각 사 사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최근 인사에서 60대에서 50대로의 세대교체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강조하면서 금융계열사 60대 CEO들의 자리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두 사장 모두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교체가 기정사실화됐다”고 전했다.

윤용암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1956년생으로 마찬가지로 ‘60대 퇴진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지난 2014년 12월 취임하면서 3년 임기 역시 내달로 만료된다. 윤 사장 역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증권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715억원으로 전년 1742억원 대비 55.8%나 급증했다. 영업이익 역시 3600억원으로 전년 2116억원 대비 70.1%나 늘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쇄신에 따른 세대교체로 새 CEO 취임이 전망된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1960년생으로 4개 금융계열사 중 유일한 50대다. 지난 2013년 12월 삼성카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현재 해체된, 과거 삼성그룹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출신 임원들이 이번 삼성 금융계열사 CEO로 새롭게 발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준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겸부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